

관세법

【문제 1】 관세법령상 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수입자 A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신청서와 물품의 견본, 설명자료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반려되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적용 세율을 각각 쓰고, (2)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쓰시오. (11점)

물음 3) 간이세율의 적용 품목과 비적용 물품을 각각 쓰시오. (9점)

【문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이하 '관세환급특례법령'이라 함)과 관련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중소기업 B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을 계속 받아 왔으나 최근 세관의 안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였고 그 결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품목분류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세관은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액 및 가산금액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재 B사는 수출용원재료 전량을 국내 공급업체들로부터 내국신용장 거래를 통해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B사가 관세환급(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관세환급특례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자를 쓰시오. (5점)

【문제 3】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결정기준을 쓰고, (2)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작업 6가지를 쓰고, (3) 수출입 금지품목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15점)

물음 2) (1)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과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2)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대상 물품 5가지를 쓰시오. (15점)

【문제 4】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 보세운송의 신고인을 모두 쓰고, (2) 간이 보세운송에서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와 그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을 각각 쓰고, (3) 보세운송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쓰시오. (10점)

물음 2) (1)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관세 징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조난물품이 운송될 수 있는 장소를 6가지만 쓰고, (3)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쓰시오. (10점)